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박현출 사장님
참조	농산팀 변춘연 차장
발신	변호사 송기호
일자	2017년 9월 25일
제목	중도매업 허가 조건 가능 검토

위 제목 기재의 건에 관하여 당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수산물 유통법상 중도매업 허가의 법적 성격과 부관의 한계

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반면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농수산물유통법상에서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고 한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허가는 “허가 대상자의 능력 등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인적 허가로 임의적인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바67 결정)

다. 농수산물유통법은 제25조 제2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법정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중도매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6호가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라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중도매인에 대한 허가 조건은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미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근거법률의 해석 가능한 영역 내에서는 비록 위 <업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개별적 조건 내용 검토

가. 현대화 이전 수용 조건

현대화 사업에 따라 신축된 시설물로 영업구역을 이전 또는 재배치할 경우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 관계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붙일 수 있습니다.

나. 장부 및 자료 제출 의무 조건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9호가 중도매인에 대하여도 제80조의 검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제재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80조 제1항에서는 중도매인을 제외하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장부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산지유통인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 겸직 금지 조건

(1) 주주 금지 조건의 불가

중도매인 및 그 주주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산지유통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는 있으며, 이것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임직원 겸직 금지의 가능

그러나 개인 중도매인이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는 농수산물 유통법 제29조에서 금지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 를 하는 것으로 일을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위 제29조에서의 “산지유통인의 업무” 라는 것이 반드시 1인 회사인 산지유통인의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산지유통인 회사의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2017. 9. 25.

수륵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송 기 호

